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1년 8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 2011년 8월 생산은 건설업은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부분의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33.9%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16.2%), 전기장비(-8.7%) 등은 부진하였으나 자동차(23.6%), 반도체 및 부품(7.0%)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3.4%)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10.6%), 도매·소매(4.6%),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6.0%), 운수(4.6%)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함.

○ 2011년 8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한 반면,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등 내구재(12.2%), 의복, 오락·취미 등 준내구재(4.0%),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의 판매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함.
-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정밀기기 등은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자동차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함.
- 건설기성(경상)은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실적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9.2%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분의 도로·교량 및 토지조성 등과 민간부분의 부동산 및 건설업에서 주택, 석유화학업에서 기계설치 등의 발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75.4% 증가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광공업 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지수, 비농가취업자수, 수입액 등이 증가하여 100.9로 전월과 동일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소비자기대지수, 종합주가지수, 재소순환지표 등은 감소하였으나 건설 수주액, 금융기관 유동성, 상품교역조건 등이 증가하여 2.0%로 전월과 동일함.

◆ 2011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3% 상승(생활물가지수 3.8% 상승)

- 2011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6(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만 1.1%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함. 특히 교통(8.6%), 주거 및 수도·광열(5.0%), 식료품·비주류음료(4.6%)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큼.
 - 2011년 9월 생활물가지수는 124.5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부문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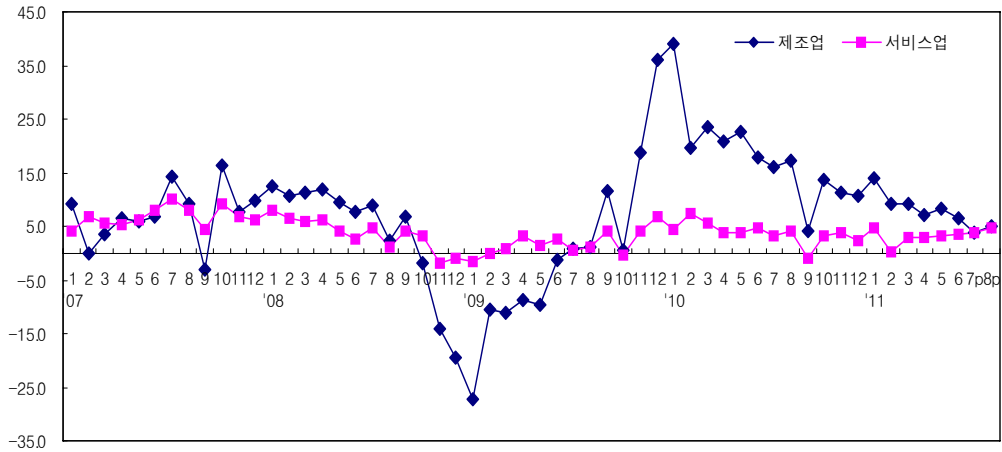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p	8월	1/4	2/4	8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5.9	10.6	7.2	4.8(-1.9)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16.2	10.9	7.4	4.9(-0.6)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15.3	11.9	7.2	4.4(-0.6)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12.0	7.2	3.8	2.7(-1.0)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19.8	18.4	11.6	6.3(-0.2)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3.3	2.7	3.3	4.8(0.5)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9.4	5.1	5.7	5.2(-0.2)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41.2	6.6	4.8	-3.7(1.3)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3.6	4.5	4.2	4.3(0.1)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9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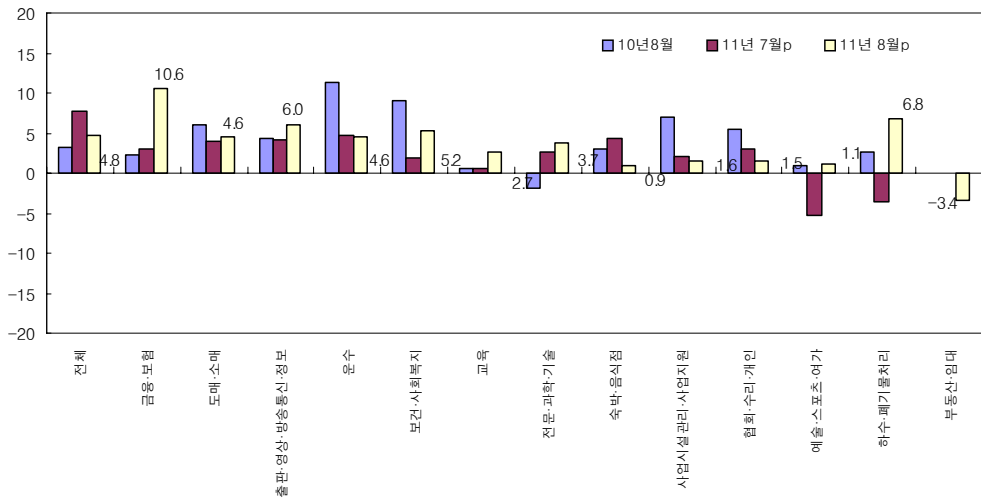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1.9), 『2011년 8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5,26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6천 명(1.1%)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746천 명으로 160천 명(1.1%) 증가하였고, 여성은 10,523천 명으로 116천 명(1.1%) 증가하였음.
- 2011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동기와 동일함.
 - 성별로 보면, 남성(70.9%)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50.1%)은 전년동기와 동일함(그림 3 좌측 참조).
- 2011년 3/4분기 중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
 - 남성의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7%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하였음(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3/4분기 중 취업자는 24,48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63천 명(1.5%)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24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8천 명(1.5%)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23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5천 명(1.5%)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표 2〉 최근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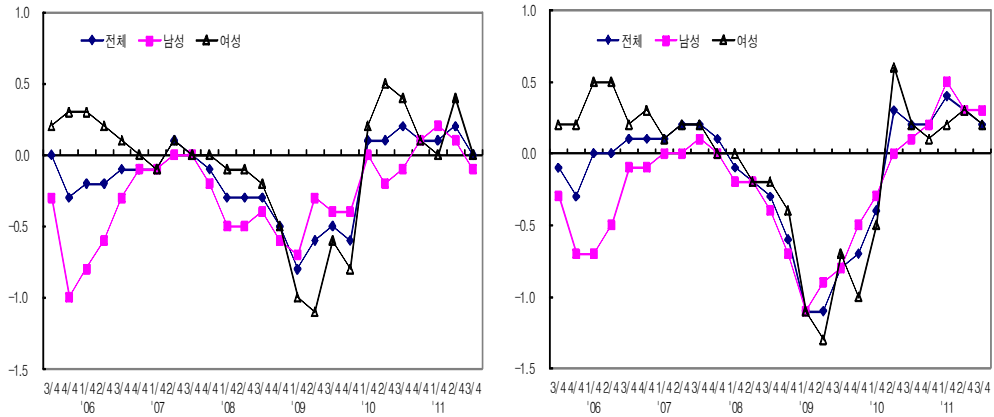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경제활동인구	24,166 (1.5)	25,038 (1.5)	24,993 (1.4)	24,911 (1.1)	24,796 (1.4)	24,488 (1.3)	25,437 (1.6)	25,269 (1.1)	25,257 (1.7)	25,076 (0.7)
참가율	59.8	61.8	61.5	61.2	60.8	59.9	62.0	61.5	61.4	61.0
취업자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054 (1.0)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495 (2.0)	24,318 (1.1)
고용률	57.0	59.6	59.3	59.1	58.9	57.4	59.9	59.5	59.6	59.1
실업자	1,130	868	873	857	808	1,028	865	786	762	758
실업률	4.7	3.5	3.5	3.4	3.3	3.9	3.4	3.1	3.0	3.0
비경제활동인구	16,254 (1.0)	15,493 (1.0)	15,656 (0.8)	15,770 (1.3)	15,962 (0.3)	16,392 (0.8)	15,559 (0.4)	15,847 (1.2)	15,862 (0.3)	16,065 (1.9)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1. 10), 『2011년 9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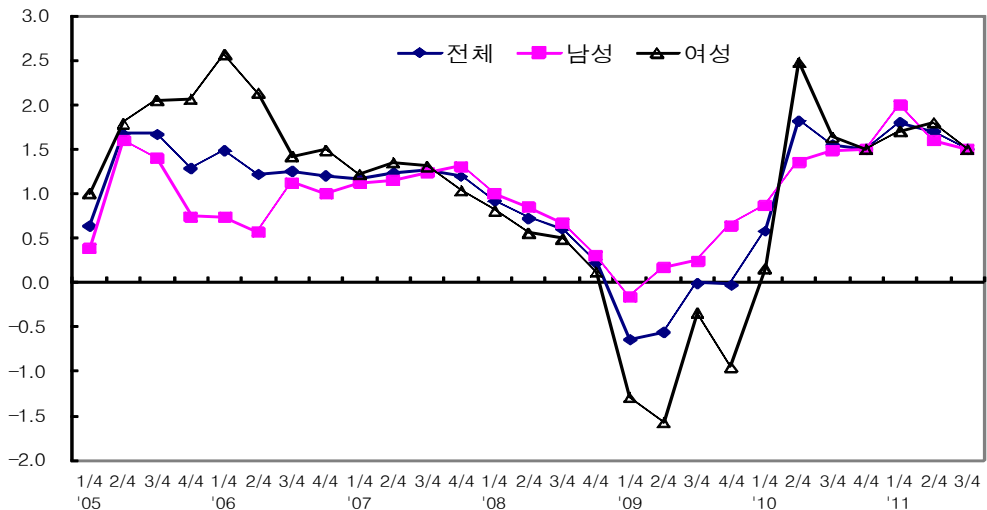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3/4분기 중 실업자는 78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8천 명(-10.0%)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49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8천 명(-8.7%)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8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0천 명(-12.1%)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4%로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하였고, 여성은 2.7%로 전년동기대비 0.5%p 감소하였음.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3/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4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1천 명(1.2%)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5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천 명(1.3%)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8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4천 명(1.2%)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1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와 동일함.

◆ **제조업 취업자 감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1년 3/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29천 명, 2.8%), 전기·운수·통신·금융업(186천 명, 6.6%), 도소매·숙박음식점업(53천 명, 1.0%)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51천 명, -2.9%), 건설업(-35천 명, -2.0%), 제조업(-12천 명, -0.3%)에서는 감소함.
 - 2010년 이래 지속되었던 제조업 증가가 감소로 반전되었음(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산 업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054 (1.0)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495 (2.0)	24,318 (1.1)
농림어업	1,235 (-11.7)	1,733 (-4.6)	1,754 (-2.5)	1,757 (-3.2)	1,544 (-2.2)	1,207 (-2.3)	1,736 (0.2)	1,704 (-2.9)	1,713 (-2.2)	1,698 (-3.3)
제조업	3,911 (1.6)	4,015 (4.5)	4,053 (6.9)	4,062 (6.6)	4,131 (7.0)	4,139 (5.8)	4,127 (2.8)	4,041 (-0.3)	4,031 (-0.7)	4,014 (-1.2)
건설업	1,644 (-3.6)	1,816 (2.5)	1,791 (5.4)	1,773 (2.8)	1,761 (3.3)	1,641 (-0.2)	1,774 (-2.3)	1,755 (-2.0)	1,789 (-0.1)	1,723 (-2.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32 (-1.0)	5,461 (-1.3)	5,443 (-1.2)	5,375 (-1.7)	5,442 (-1.3)	5,471 (-1.1)	5,457 (-0.1)	5,496 (1.0)	5,488 (1.6)	5,420 (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859 (3.2)	8,294 (3.9)	8,244 (0.9)	8,240 (0.6)	8,234 (1.0)	8,097 (3.0)	8,529 (2.8)	8,473 (2.8)	8,451 (3.5)	8,450 (2.5)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34 (4.1)	2,831 (2.4)	2,816 (2.3)	2,828 (2.1)	2,855 (1.9)	2,880 (1.6)	2,933 (3.6)	3,001 (6.6)	3,011 (6.7)	3,002 (6.1)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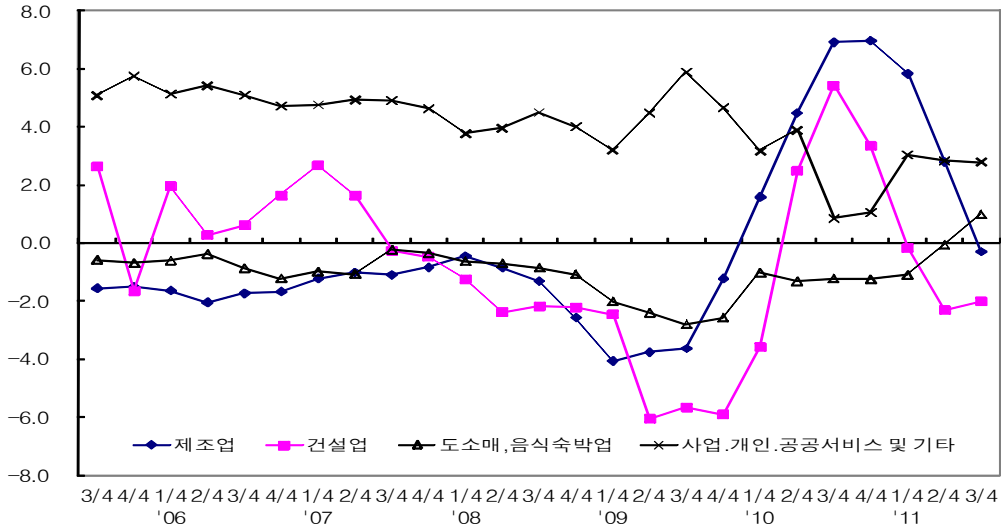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 10), 『2011년 9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직 중심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3/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임금근로자는 6,96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9천 명(-0.4%)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51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92천 명 (2.3%)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731천 명으로 572천 명(5.6%)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72천 명으로 76천 명(-1.5%) 감소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1,716천 명으로 104천 명(-5.7%)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6 좌측 참조).
- 고용주는 1,500천 명으로 15천 명(1.0%) 증가하였고, 자영업자는 4,180천 명으로 19천 명(0.5%)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1,285천 명으로 63천 명(-4.7%) 감소하였음.

○ 2011년 3/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8,46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135천 명(154.2%)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5,419천 명으로 4,943천 명(-24.3%) 감소하였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는 하계휴가, 추석연휴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기간이 겹쳐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 추측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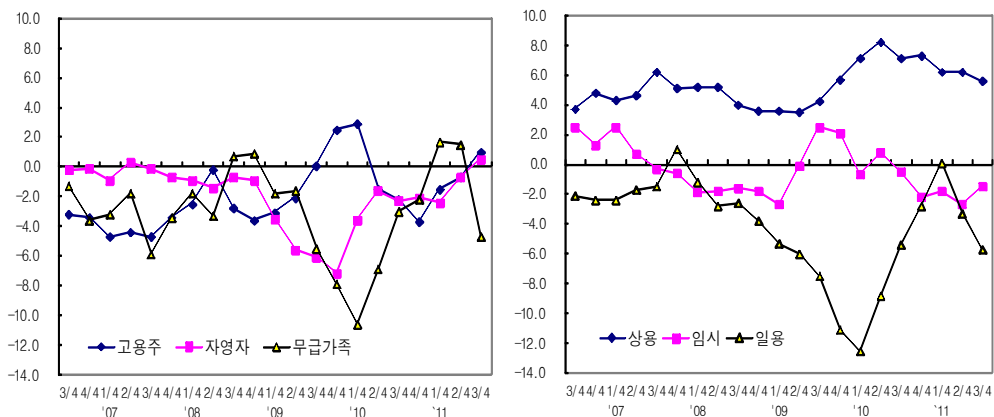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054 (1.0)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483 (1.5)	24,495 (2.0)	24,318 (1.1)
비임금근로자	6,638 (-3.5)	7,023 (-2.6)	6,994 (-2.4)	6,951 (-2.3)	6,778 (-2.5)	6,542 (-1.5)	7,004 (-0.3)	6,965 (-0.4)	6,985 (0.4)	6,940 (-0.2)
자영업주	5,514 (-1.9)	5,696 (-1.6)	5,646 (-2.3)	5,605 (-2.3)	5,514 (-2.6)	5,399 (-2.1)	5,657 (-0.7)	5,680 (0.6)	5,680 (0.9)	5,692 (1.6)
무급가족종사자	1,124 (-10.6)	1,327 (-6.9)	1,348 (-3.0)	1,346 (-2.6)	1,264 (-2.2)	1,143 (1.7)	1,348 (1.5)	1,285 (-4.7)	1,305 (-1.9)	1,248 (-7.3)
임금근로자	16,398 (2.3)	17,148 (3.8)	17,126 (3.3)	17,103 (2.5)	17,211 (3.2)	16,917 (3.2)	17,568 (2.5)	17,518 (2.3)	17,510 (2.7)	17,378 (1.6)
상용근로자	9,808 (7.1)	10,060 (8.2)	10,158 (7.1)	10,217 (6.4)	10,320 (7.3)	10,413 (6.2)	10,681 (6.2)	10,731 (5.6)	10,710 (5.5)	10,764 (5.4)
임시근로자	4,892 (-0.7)	5,179 (0.8)	5,148 (-0.5)	5,106 (-0.9)	5,052 (-2.2)	4,804 (-1.8)	5,041 (-2.7)	5,072 (-1.5)	5,031 (-1.8)	5,047 (-1.2)
일용근로자	1,699 (-12.5)	1,909 (-8.8)	1,820 (-5.4)	1,780 (-7.8)	1,838 (-2.8)	1,701 (0.1)	1,846 (-3.3)	1,716 (-5.7)	1,769 (-0.3)	1,567 (-11.9)
36시간 미만	4,851 (56.9)	3,197 (6.7)	3,329 (-1.8)	3,019 (2.5)	3,090 (4.4)	3,246 (-33.1)	3,210 (0.4)	8,464 (154.2)	6,158 (73.6)	15,672 (419.1)
36시간 이상	17,671 (-8.7)	20,705 (1.1)	20,362 (2.4)	20,762 (0.9)	20,620 (1.1)	19,739 (11.7)	21,067 (1.7)	15,419 (-24.3)	17,604 (-11.1)	8,050 (-61.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2011. 10), 『2011년 9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우) 및 비임금근로자(좌)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전년동기대비 모든 학력에서 실업률 감소

- 2011년 3/4분기 중 연령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15~29세(6.7%, -0.9%p), 30대(3.2%, -0.3%p), 40대(2.0%, -0.5%p), 50대(2.1%, -0.2%p)에서 감소함.
 - 60세 이상(2.1%, 0.1%p)은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3%, -0.2%p), 고졸(3.7%, -0.3%p), 대졸 이상(2.9%, -0.6%p) 모든 학력에서 감소함.
- 2011년 3/4분기 중 전체 실업자 786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41천 명으로 97천 명 감소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전 체	1,130(4.7)	868(3.5)	873(3.5)	857(3.4)	808(3.3)	1,028(4.2)	865(3.4)	786(3.1)	762(3.0)	758(3.0)
15~29세	408(9.5)	332(7.7)	323(7.6)	298(7.2)	297(7.1)	372(8.8)	332(7.9)	284(6.7)	265(6.3)	256(6.3)
30~39세	234(3.9)	217(3.6)	213(3.5)	210(3.5)	194(3.2)	237(4.0)	211(3.5)	189(3.2)	201(3.4)	182(3.1)
40~49세	192(2.9)	154(2.3)	165(2.5)	179(2.7)	151(2.2)	167(2.5)	145(2.1)	138(2.0)	138(2.0)	137(2.0)
50~59세	150(3.2)	105(2.1)	113(2.3)	114(2.3)	114(2.3)	133(2.7)	107(2.0)	108(2.1)	103(2.0)	115(2.2)
60세 이상	146(5.8)	61(2.1)	59(2.0)	57(1.9)	53(1.9)	119(4.5)	70(2.3)	67(2.1)	56(1.8)	68(2.2)
중졸 이하	241(5.1)	131(2.5)	131(2.5)	114(2.2)	112(2.2)	195(4.1)	112(2.1)	119(2.3)	103(2.0)	134(2.6)
고졸	493(5.0)	386(3.8)	408(4.0)	405(4.0)	392(3.9)	465(4.6)	408(4.0)	372(3.7)	357(3.5)	335(3.4)
대졸 이상	396(4.2)	352(3.6)	334(3.5)	339(3.5)	304(3.1)	369(3.8)	345(3.4)	296(2.9)	302(3.0)	289(2.9)
취업무경험실업자	57	46	35	26	38	52	45	45	32	38
취업유경험실업자	1,072	822	838	831	770	977	820	741	731	72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임.
 자료 : 통계청(2011. 10), 『2011년 9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1년 7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 2011년 7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98천 원으로 전년 동월(2,880천 원)대비 0.6%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하였으나 초과급여 증가율은 7.2%, 특별급여 증가율은 19.8% 감소하여 2011년 7월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2010년 7월 대비 1.2% 감소한 3,079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7% 상승한 1,242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상승에 힘입어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은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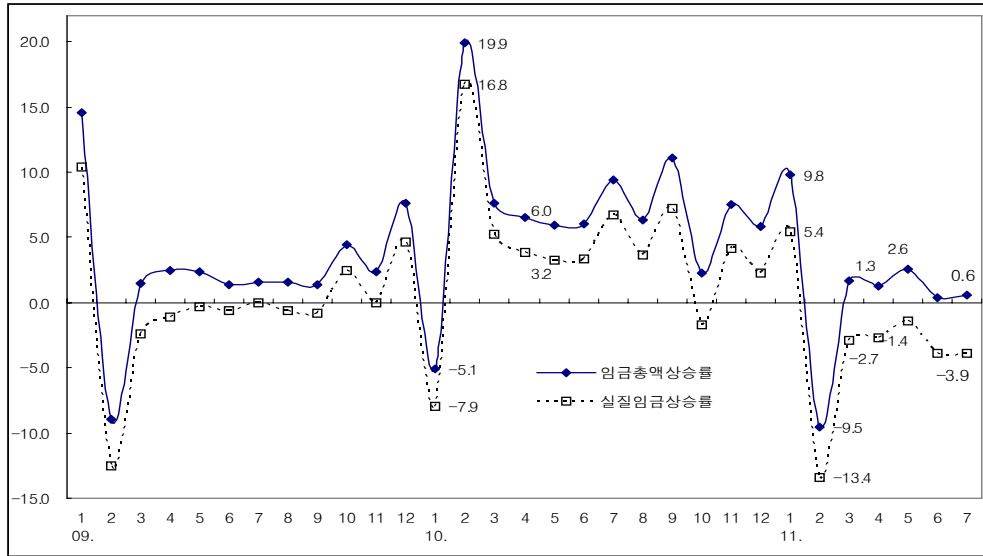
(단위: 천 원/월, %)

		2008	2009	2010	2011						
					상반기	2/4분기	7월	상반기	1/4분기	2/4분기	7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569 (-)	2,636 (2.6)	2,816 (6.8)	2,744 (6.6)	2,666 (6.2)	2,880 (9.1)	2,766 (0.8)	2,830 (0.2)	2,703 (1.4)	2,898 (0.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02 (-)	2,863 (2.2)	3,047 (6.4)	2,966 (6.6)	2,903 (6.3)	3,117 (8.8)	2,930 (-1.2)	2,992 (-1.3)	2,869 (-1.2)	3,079 (-1.2)
	정액 급여	2,057 (-)	2,139 (4.0)	2,234 (4.5)	2,217 (4.5)	2,223 (4.8)	2,232 (4.4)	2,312 (4.3)	2,308 (4.4)	2,316 (4.2)	2,344 (5.0)
	초과 급여	179 (-)	175 (-2.2)	196 (12.2)	190 (15.3)	198 (13.4)	197 (11.4)	175 (-7.9)	168 (-8.4)	183 (-7.4)	182 (-7.2)
	특별 급여	566 (-)	550 (-2.8)	617 (12.3)	560 (13.1)	483 (10.7)	689 (24.9)	442 (-21.0)	516 (-18.9)	369 (-23.5)	553 (-19.8)
임시·일용근로 자	임금총액	1,052 (-)	1,073 (1.9)	1,056 (-1.6)	1,057 (-1.0)	1,062 (0.1)	1,102 (3.7)	1,172 (10.8)	1,149 (9.2)	1,192 (12.3)	1,242 (12.7)
실질임금 (전체 근로자)		2,342 (-)	2,337 (-0.2)	2,426 (3.8)	2,384 (3.8)	2,306 (3.5)	2,485 (6.7)	2,303 (-3.4)	2,364 (-4.1)	2,243 (-2.7)	2,388 (-3.9)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109.7 (4.7)	112.8 (2.8)	116.1 (2.9)	115.1 (2.6)	115.6 (2.6)	115.9 (2.6)	120.1 (4.3)	119.7 (4.5)	120.5 (4.2)	121.4 (4.7)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실질임금은 3.9% 감소함.

- 소비자물가상승률(2005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총액은 2,38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함.
- 명목임금은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했으나,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은 2011년 2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7 참조).

◆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 건설업의 임금상승이 가장 높은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임금감소가 가장 높음.

- 2011년 7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건설업(15.2%), 숙박 및 음식점업(13.7%), 도매 및 소매업(6.8%) 순으로 나타남.
- 반면 2011년 7월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한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6%), 사업서비스업(-11.8%) 등에서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높은 명목임금은 7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임.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월, %)

	2010		2011		
		상반기	7월	상반기	7월
전 산업	2,816 (6.8)	2,744 (6.6)	2,880 (9.4)	2,766 (0.8)	2,898 (0.6)
광업	3,000 (7.3)	2,933 (6.9)	3,442 (24.3)	3,324 (13.4)	3,263 (-5.2)
제조업	2,985 (9.1)	2,854 (8.9)	3,088 (10.6)	2,898 (1.5)	3,248 (5.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281 (8.2)	4,547 (-5.6)	5,189 (-1.7)	4,822 (6.0)
하수·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360 (5.3)	2,462 (7.7)	2,391 (1.3)	2,485 (1.0)
건설업	1,944 (7.9)	1,925 (6.9)	1,856 (8.6)	2,175 (13.0)	2,138 (15.2)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701 (6.8)	2,765 (11.0)	2,817 (4.3)	2,953 (6.8)
운수업	2,381 (5.4)	2,307 (5.7)	2,274 (3.3)	2,316 (0.4)	2,358 (3.7)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434 (3.0)	1,440 (8.2)	1,624 (13.2)	1,638 (13.7)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320 (4.7)	3,479 (9.2)	3,670 (10.6)	3,687 (6.0)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59 (7.1)	4,729 (1.6)	4,796 (0.8)	4,774 (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1,983 (6.4)	1,959 (2.5)	1,990 (0.3)	2,019 (3.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782 (6.8)	4,387 (23.1)	3,682 (-2.6)	3,747 (-14.6)
사업서비스업	1,848 (8.2)	1,816 (8.3)	1,894 (12.0)	1,654 (-8.9)	1,670 (-11.8)
교육서비스업	3,157 (1.4)	3,154 (0.4)	3,520 (2.8)	2,978 (-5.6)	3,361 (-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553 (2.0)	2,591 (2.8)	2,429 (-4.9)	2,462 (-5.0)
여가관련 서비스업	2,107 (0.9)	2,054 (-0.4)	2,138 (7.0)	2,078 (1.2)	2,205 (3.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064 (4.6)	2,156 (5.7)	2,147 (4.0)	2,179 (1.1)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 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인 미만과 300인 이상에서 명목임금 감소

- 2011년 7월 규모별 명목임금상승률은 5~29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모두 감소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명목임금상승률은 2011년 7월 기준 2,70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5% 하락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4,43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함.
 - 세부 규모를 살펴보면, 5~9인은 전년동월대비 2.4%, 10~29인은 전년동월대비 1.7%, 300인 이상은 2.6% 하락한 반면, 30~99인은 전년동월대비 1.0%, 100~299인은 4.9% 상승함.
 - 5~29인 사업체의 임금총액 하락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감소했다가 2010년 증가한 특별급여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8〉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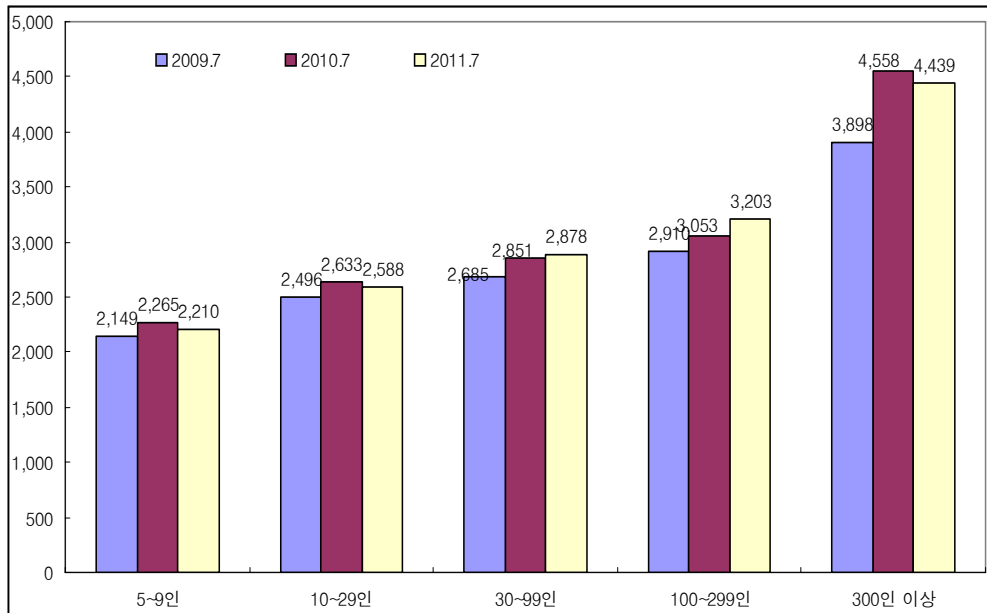
(단위 : 천 원/월, %)

		2010			2011	
			상반기	7월	상반기	7월
전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 전체	3,047 (6.4)	2,966 (6.6)	3,117 (8.8)	2,930 (-1.2)	3,079 (-1.2)
	정액급여	2,234 (4.5)	2,217 (4.5)	2,232 (4.4)	2,312 (4.3)	2,344 (5.0)
	초과급여	196 (12.2)	190 (15.3)	197 (11.4)	175 (-7.9)	182 (-7.2)
	특별급여	617 (12.3)	560 (13.1)	689 (24.9)	442 (-21.0)	553 (-19.8)
5~299인	상용임금 전체	2,699 (5.5)	2,639 (5.9)	2,718 (5.7)	2,611 (-1.1)	2,705 (-0.5)
	정액급여	2,082 (4.3)	2,065 (4.5)	2,086 (4.1)	2,177 (5.4)	2,208 (5.8)
	초과급여	176 (13.6)	172 (17.6)	180 (14.2)	147 (-14.2)	153 (-15.1)
	특별급여	441 (8.4)	403 (9.1)	452 (10.3)	287 (-28.7)	345 (-23.6)
300인 이상	상용임금 전체	4,291 (9.1)	4,129 (8.8)	4,558 (17.0)	4,132 (0.1)	4,439 (-2.6)
	정액급여	2,779 (5.2)	2,756 (4.8)	2,757 (5.8)	2,823 (2.4)	2,842 (3.1)
	초과급여	268 (9.6)	257 (10.7)	257 (5.9)	282 (9.7)	290 (12.8)
	특별급여	1,245 (18.7)	1,115 (19.6)	1,544 (47.3)	1,027 (-7.9)	1,307 (-15.4)

주 : 1)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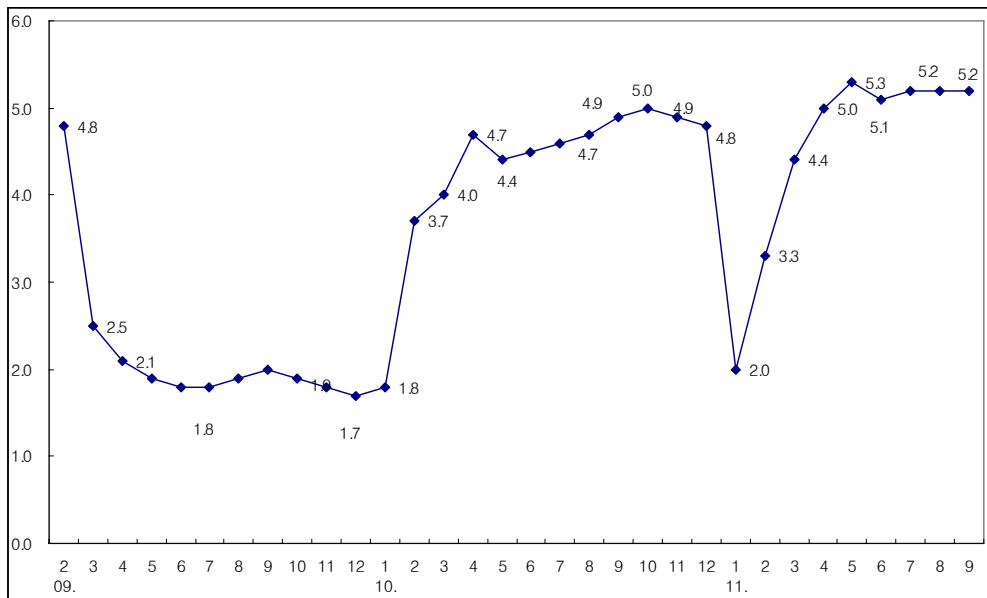
◆ 2011년 9월 협약임금인상률 5.2%

○ 2011년 9월 협약임금인상률은 5.2%를 기록함.

- 2011년 9월 말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5.2%로 2010년 같은 기간의 인상률(4.9%)에 비해 0.3%p 상승하였음.

[그림 9]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1년 7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2.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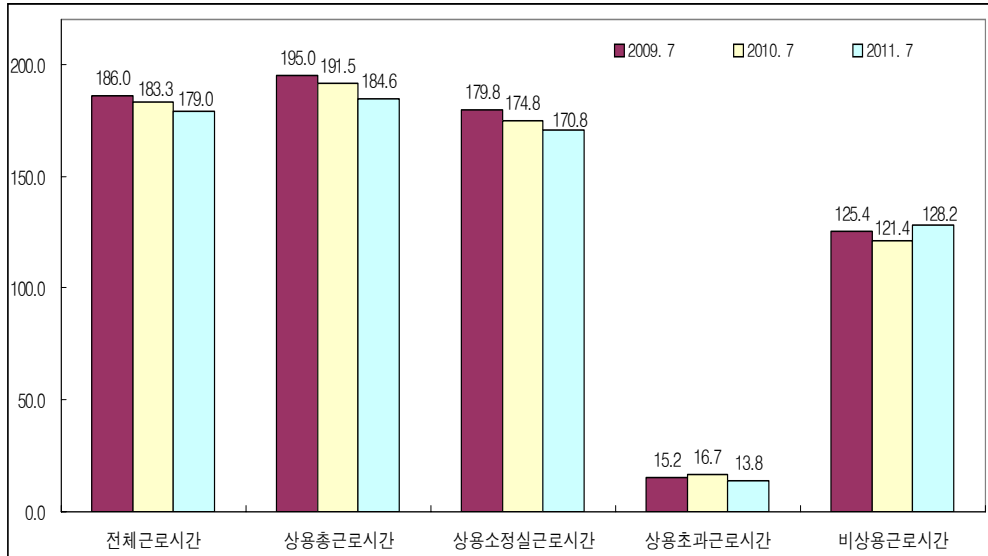
○ 2011년 7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함.

- 2011년 7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9.0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83.3시간)에 비해 4.3시간(-2.3%)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84.6시간으로 전년동월(191.5시간)대비 3.6%, 소정일 근로시간은 170.8시간으로 전년동월(174.8시간)대비 2.3%, 초과근로시간은 13.8시간으로 전년동월(16.7시간)대비 17.4% 감소함(그림 10 참조).

-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28.2시간으로 전년동월(121.4시간)대비 6.8시간(5.6%) 증가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은 증가한 반면,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함.
 - 2011년 7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89.0시간, 12.4%), 건설업(154.5시간, 3.6%), 교육서비스업(160.5시간, 2.2%)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한편 사업서비스업(171.2시간, -8.4%), 부동산 및 임대업(196.5시간, -4.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4.7시간, -4.0%)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1년 7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6.5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54.5시간)이 가장 짧았음.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월, %)

	2009	2010	2011		상반기	7월
			상반기	7월		
전 산업	176.1(-0.3)	176.7(0.3)	175.1(0.6)	183.3(-1.5)	175.1(0.0)	179.0(-2.3)
광업	187.6(4.0)	188.1(0.3)	185.2(-0.8)	197.0(3.5)	185.5(0.2)	190.8(-3.1)
제조업	188.5(-0.8)	192.1(1.9)	190.5(3.4)	200.6(0.2)	189.9(-0.3)	194.2(-3.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7.9(2.5)	176.9(-0.6)	174.9(0.2)	183.2(-3.7)	175.2(0.2)	180.8(-1.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194.0(0.3)	192.9(-0.6)	191.2(-0.1)	200.3(-2.1)	184.7(-3.4)	189.1(-5.6)
건설업	147.2(-5.5)	146.1(-0.7)	146.9(-2.1)	149.1(-1.5)	154.2(5.0)	154.5(3.6)
도매 및 소매업	179.0(0.2)	177.2(-1.0)	175.8(-0.8)	184.0(-2.7)	173.7(-1.2)	178.1(-3.2)
운수업	184.4(8.0)	184.6(0.1)	183.0(0.9)	190.4(-1.6)	178.0(-2.7)	184.2(-3.3)
숙박 및 음식점업	164.3(-3.5)	163.7(-0.4)	161.2(-1.8)	168.1(1.5)	186.3(15.6)	189.0(12.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	166.8(0.4)	166.2(-0.4)	164.8(0.6)	172.1(-3.5)	162.9(-1.2)	167.5(-2.7)
금융 및 보험업	166.8(0.5)	165.3(-0.9)	163.5(-1.4)	170.3(-4.5)	161.2(-1.4)	165.8(-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2.0(-1.2)	200.4(-0.8)	199.2(-1.0)	206.5(-2.2)	193.2(-3.0)	196.5(-4.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7.7(0.1)	166.3(-0.8)	164.5(-0.5)	171.3(-3.4)	164.2(-0.2)	168.5(-1.6)
사업서비스업	179.0(-1.3)	180.1(0.6)	176.9(-0.6)	186.8(-0.9)	168.7(-4.6)	171.2(-8.4)
교육서비스업	153.7(1.9)	149.9(-2.5)	147.7(-3.2)	157.0(-7.0)	150.3(1.8)	160.5(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4(0.2)	176.5(0.1)	174.4(0.2)	181.9(-2.0)	171.5(-1.7)	174.7(-4.0)
여가관련 서비스업	161.6(1.6)	158.7(-1.8)	157.6(-2.1)	164.0(-2.3)	155.4(-1.4)	163.7(-0.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	175.5(-0.2)	173.9(-0.9)	172.7(0.1)	185.2(-2.3)	174.0(0.8)	180.2(-2.7)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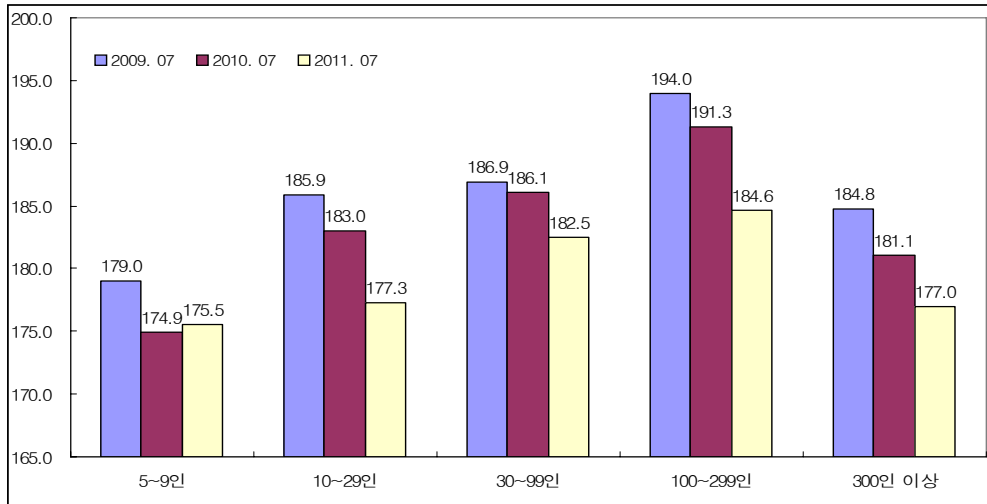
◆ 10인 이상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1년 7월 규모별 근로시간은 전규모 사업장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9.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3%, 300인 이상 사업체는 177.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월)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23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50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10월 19일 기준)는 384,013일로 집계됨.

<표 10>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1. 1. 1~2011. 10. 23.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50	73	△31.5
종 결	45	58	-
진 행	5 (2)	15 (3)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384,013	412,830	△7.0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10월 19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한진중공업

- 9월 30일, 노조 지회는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임원선거를 위한 선관위원(5명) 선출. 임원선거 일정을 10월 6일 입후보 등록 마감. 10월 7일 기호 추천, 10월 11일~13일 선거운동(10. 13 부재자 투표), 10월 14일 임원선거 투표. 한편 이날 해고자 1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요구 및 항의서 전달
- 10월 5일, 지회 선거관리위원장 김두홍 등 2명은 사측 노무1팀장과 면담. 노조 전임자 일부 유급인정 및 영도조선소 내 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유급인정 불가 및 사내 총회 개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힘(제3의 총회장소 제공 가능).
- 10월 6일, 임원선거 후보등록 마감. 3개 후보조가 입후보함.
- 10월 7일, 금속노조 전 위원장 등 4명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출석 예정(박유기 전 위원장, 채길용 지회장, 조남호 회장, 이재용 사장).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권고안을 제시함.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이를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김진숙 등의 농성해제, 노사합의시 성립 등 조건부).

【권고안】 ① 정리해고 조합원 94명 전원을 1년 후 재고용

② 조합원들의 생계비로 인도적 차원에서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③ 김진숙 등 4인의 크레인농성 해제 전제조건

- 10월 7일, 노조 지회는 임원선거 후보 기호 추천을 실시(1번 채길용, 2번 차해도, 3번 김상욱), 10월 8일,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 한진 정투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일까지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함. 이날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5차 희망버스가 방문함(2,500여명 참가).
- 10월 10일, 국회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함. 이에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10월 11일에 서울에서 면담하여 의견조율. 10월 11일,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지회 관련 교섭 재개’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이후 금속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기로 함. 조남호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회사 살리기’에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 발송함.)

1) 주요한 내용은 “사측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였고, “지회와 금속노조의 결단만 남아 있을 뿐 더 이상 추가협상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전함. “노조와의 합의내용 준수 및 현 고용유지 등 8월 10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시 한 약속

- 10월 14일, 노조 지회 7기 임원선거에서 ‘차해도 후보조’가 당선(임기: 2013. 9. 30 까지). 투표결과는 재적 808명 중 786명 투표(97.3%), 차해도 후보조가 55.1%로 당선됨.)
- 10월 17일, 노사는 상견례 개최 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키로 결정하였고, 18일 신관 105호에서 상견례 개최함. 이날 노사는 85호 크레인 농성 및 해고자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자는 원칙에 합의하였고, 빠른 시일 내 간사 협의로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함. 20일에는 노사가 현안문제를 논의함. 노조측은 기존 요구안(퇴직금 재정산, 근속 및 호봉 인정, 학자금 지급, 크레인 농성자 민·형사 면책) 외에 추가로 임단협 합의시 해고자 전원 타결금 지급을 요구함. 사측은 ‘합의 후 1년 이내 경력사원 재고용, 2,000만 원 이내 생계비 지원’ 외 추가 요구사항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노측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 달라 하고 퇴장함.

■ 공공운수노조 전주시내버스 5개사 분회

- 공공운수노조 5개 분회는 사측의 교섭참여 등을 요구함. 9월 5일부터 계속해오던 준법운행 등을 중단하고 9월 30일 정상업무를 수행함. 이는 9월 28일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측이 10월 3일 교섭(협의)에 응하기로 하여 노조가 준법운행 등을 한시적으로 철회키로 결정한 것임.
- 10월 3일, 전주시내버스 5개사 노사는 전북택시사업조합 회의실에서 회동하여 ‘월 3회 회동 및 노사 각 2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함(합의서 미작성). 그러나 10월 4일 5개 분회는 준법운행·요금통 및 행선판 미부착 운행 등을 재개함. 이 배경에는 10월 3일 회동 결과(합의내용)에 대한 문서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노사는 10월 3일 회동 결과를 문서화하기 위해 문구 조율중임.
- 10월 15일, 제일여객 사측은 제일여객 분회장 등을 업무방해(출차방해) 혐의로 고소함. 조합원들은 평상시 퇴근시 다음날 배차된 버스 순대로 출차가 가능하도록 차고지에 주차하나, 10월 14일과 15일 퇴근시에는 배차순서에 상관없이 주차하였다는 이유임. 이에 노조 분회는 사측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9월 임금 2억 1천 9백여만 원을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사측은 노조의 준법운행으로 인한 수익감소로 임금이 체불된 것이며, 정상운행하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우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함. 사측은 10월 20

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회사 살리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임.

- 2) 당선자 주요공약: ▲정리해고 사태 해결 및 3년치 임단협 조속한 마무리 ▲노동조합 정상화 ▲고용안정보장협약 공증제 도입 ▲40시간 연장수당 및 교통비 미지급 문제해결 ▲일방적 휴업 저지 ▲회장과 핫라인 개설 등임.

일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함.

- 10월 18일, 전북지역자동차노조(5개사 지부장)와 시내버스 5개사 대표는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하여 ‘운수노조에서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임금에 대하여 향후 전북지역자동차노조 조합원들에게도 2011년 9월 30일 기준 3년 동안('08.10.1~'11.9.30) 소급분을 동등하게 지급하기로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분회

- 1노조(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는 4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의 임금교섭 요구에, 사측은 관례적으로 교섭을 7월부터 실시했다며 불응하여 6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교섭불응에 대해서는 사측 책임을 인정하고 조정을 중지한 이후 파업찬반투표 실시. 6월 25일, 26일 파업 돌입. 7월 8일부터 임금인상 및 체불임금 18억여 원 지급 등 요구 재파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7월 11일 업무에 복귀한 바 있음.
- 그러나 7월 14일 노사 교섭은 2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구하며 교섭장 입구 등을 점거하여 무산되고, 사측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거부하여 무산됨. 9월, 1노조(교섭대표노조)와 사측은 인천영업소에서 9차 임금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교섭결렬 선언. 노조는 10월 10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입장 밝힘.
- 10월 4일, 1노조는 광역버스 운행중단 돌입. 사측의 추가 제시안이 없을 경우 10월 10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하였음. 노사간 핵심쟁점은 현 포괄적 임금제 폐지(주40시간을 적용하여 실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지급). 사측은 임금 2.5% 인상안을 제시함.
- 10월 7일, 1노조는 삼화고속 본사 앞에서 ‘2011 임투승리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삼화고속지회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0월 10일 05:00부로 전면파업 돌입. 이에 사측도 10일, 인천지노위 및 부평구청에 직장폐쇄신고서 제출함.
- 한편 10월 14일에는 조합원 2명,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에 ‘새희망 노동연대 삼화고속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신고서(상급단체 없음)를 제출함. 설립이유는 기존 3개 노조에 실망하여 별도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 삼화고속에는 3개의 복수노조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임.³⁾
- 10월 20일, 노사는 제12차 임금교섭을 실시하였으며, 노조가 수정안 제시. 이에 사측은 노조의 수정안에 대해 내부검토 후 차기 교섭시 논의하기로 함.

3) 제1노조: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민주노총, 교섭대표노조), 제2노조: 고속노조 삼화고속지부(한국노총), 제3노조: 삼화고속노조(상급단체 미가입)

■ 유성기업

- 9월 30일, 사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사실관계가 확인된 106명 중 18명에 대한 징계양정을 의결함.4)
- 2차 징계대상자 104명에 대해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징계위원회(사실심리) 개최. 한편 사측은 5차에 걸쳐 조합원 564명 전원에 대해 징계방침(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견책 등 선처 입장)
- 10월 4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사실관계가 확인된 106명 중 28명에 대한 징계양정을 의결(양정확정자 누계 69명: 출근정지 29명<1~3개월> · 정직 34명<10일~3개월> · 견책 6명)
- 이날 사측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 종료 후 임금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사측은 주간연속 2교대제는 전체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신설노조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유성기업지회와 일방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 재차 통보5)
- 10월 10일, 사측은 1차 징계대상자 106명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공고하고, 개별 징계의결 결과 및 대표이사의 징계양정 조정을 거쳐 징계처분 예정임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함. 그러나 노조측의 반발도 만만하지 않음. 사측이 징계양정 결정시(징계위원 노사 각 5명 참석) 근로자 징계위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배제시킨 후 사용자위원만으로 25명 해고를 결정하였기 때문임. 단체협약 제 31조에는 징계위원은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고, 해고의 경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이날 사측은 아산·영동지회와 조합원 87명을 대상으로 17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 10월 12일, 아산·영동지회, 각 임원선거 진행. 아산지회, 영동지회 각각 1개 후보자가 출마함. 각 단독후보자가 당선됨(아산 96% 찬성, 영동 100% 찬성).
- 10월 17일, 징계양정이 끝난 1차 징계대상자 106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예정을 개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10월 19일에 2차 징계대상자 102명 전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의결함(출근정지 8명, 정직 38명, 견책 52명 가결, 해고 4명은 부결).
- 10월 20일에는 사측이 2차 징계대상자 102명 중 19일 해고양정 의결시 부결된 4명에 대해 노측위원을 퇴거시킨 후 해고를 의결함. 한편 사측은 노조의 공장 점거

4) 그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공장점거 등 관련 징계대상자 120명 중 107명에 대하여 징계사유 사실관계를 확정함(징계대상자 120명 중 신설노조 7명 및 기존노조 6명 등 13명은 추후 징계위 개최 예정). 9월 27일부터 106명(107명 중 휴직 1명 제외) 징계양정 의결중이었음(106명에 대한 의결 종료 후 일괄통지 예정).

5) 복수노조 시행 이후 7월 15일 '유성기업노조'가 신설됨. 8월 4일 사측은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금속노조, 유성기업노조), 8월 19일 사측은 유성기업노조에 개별교섭 동의하는 문서를 통보함.

등을 우려 10월 19일부터 용역경비 30여 명을 동원하여 아산·영동공장 정문에 배치한 후 해고자 등의 노조사무실 출입통제중임.

■ 제주지역일반노조 제주도립예술단지회

- 노조 지회는 현재 조합원이 7명(전체 직원 31명).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임. 노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2차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교섭하였으나, 교섭에 진전을 보이지 않음. 지난 2010년 5월 조정신청과 쟁의찬반투표를 거쳤음.
- 그러나 2010년 5월 노조 지회장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함. 노조는 교섭이 진전 없자 6월부터 지회장 해고 철회 및 성희롱 가해자 징계(안무담당 직원에게 모유수유를 적당히 하라 등의 발언을 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함.
- 노<사>의 주요 쟁점은 단협 전문에 ‘노조와 제주도는 정치, 경제 등’ 문구 추가 <‘정치’ 문구 추가 불가>, 단협상 근로시간(5.5시간)대로 운영규정(현재 6시간 규정) 변경<수용불가>, 단원위촉시 노조의견 반영<일부 수용검토 가능>, 단원평가시 노조와 협의<일부 수용검토 가능>,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수용불가>, 지회장 해고 철회<수용불가> 등임.
- 10월 4일, 조합원 2명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복귀. 한편 2011년 2월에 조합원 3명을 해촉한 것에 대해 노조는 공모절차를 통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함. 그러나 사측은 파업조합원 2명 선 업무복귀, 후 해고자(4명) 채용 공모절차 진행 입장 고수.
- 2011년 5월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제주지부장, 제주지역 일반노조 도립예술단지회장,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료원장,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장 등은 노사 갈등 현안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음.

【노사갈등 현안 합의문】 ① 제주도립무용단의 기간만료 통보로 인해 재위촉되지 못한 단원들에게 향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무용단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노력 ② 동서교통의 노사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노력하고 특히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③ 제주의료원 노사는 단협해지를 철회하고 단협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동시 이행 등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 지회 :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지난 9월 21일,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 등 노조대표 4명과 전주공장측(공장장 등), 사내하청 전주지회 해고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에 관한 구두합의를 하였음(관련 내용 노동리뷰 9월호 참조). 당시 합의에서 해고자 4명은 노조사무실 출입이 허용되고, 그 외 10명의 해고자는 원청노조 요청과 사측 허가시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10월 10일, 울산지회 조합원 20여 명은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정문 진입을 시도함. 울산동부경찰서는 이들 중 7명을 연행하였고, 11일 전원 석방함. 울산지회 해고자 30여 명은 10월 4일부터 매일 노조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현대차측은 이들 출입 허용시 점거농성 가능성 및 현대차지부 임원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여 출입불가 입장 고수
- 10월 13일, 현대차 지부는 사내하청노조 비대위에 노조사무실 진입 투쟁과 관련 간담회를 제안하였으나 비대위측에서 연기를 요청함. 현대차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청노조의 노조사무실 출입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이어서 사측에 대해서도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임.
- 10월 17일, 울산지회와 현대차 지부는 현대차 지부 사무실에서 지회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문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회는 해고자 48명 출입보장 등을 요구함. 지부는 사측과 협의하여 3명 출입보장 등을 제시하며 10월 18일까지 지회의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그러나 결국 울산지회는 현대차 지부의 제안을 거부함.
- 10월 19일, 순회투쟁단(3개 지회 해고자 중심)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장 면담을 요구(심판사건 조속처리 등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현재 한국노총 공공노련 소속의 직장노조(3,396명)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사회보험지부가 병존해 있음(6,190명). 노조(직장노조 및 사회보험지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7차례 임금교섭(본교섭 3회, 실무교섭 4회)이 진전 없자 5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이후, 6월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됨(사회보험지부 84.2%, 직장노조 82.5%).
- 6월 23일, 양 노조는 임시총회 참석자에 대한 사측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투쟁지침을 시달하였고,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4차례 지회별 지명파업에 돌입함.
- 지난 10월 10일, 양 노조는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공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결정함. 파업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양 노조 각 7명으로 구성되는 공동투쟁본부에서 결정하되, 주요 사항은 공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함. 주요 일정은 10월 30일까지 집중교섭, 24일 전 조합원 투쟁조끼 착용, 31일에는 양 노조 전 조합원 파업 상경투쟁, 12월 10일까지 주 2~3회 순환 파업 실시 및 임금교섭 미타결시 총파업(조합원 1인당 2일 파업)을 결의함.
- 이날 교섭에서 양 노조와 사측은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종료함. 노<사>간 주요 쟁점은 임금 총액대비 14% 인상 <4.1%>, 수용불가 <3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

봉제 실시(현행 2급 이상 성과연봉제 실시) 등임.

- 한편, 10월 20일 직장노조는 공단내 6층 임원실 앞 복도에서 전국지부장 교육을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점거농성 후 자진해산함. 노조가 사측에 단협 단서조항을 근거로 전국지부장 교육(10. 20~10. 21)을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단협 단서조항은 사측의 재량행위임을 이유로 노조의 요청을 거절한데서 출발함.

○ 주요 분규사업장 등

■ 한국철도공사

- 10월 6일, 노조는 노조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0월 이후 투쟁계획을 확정함. 지난 9월 28일, 노사는 ‘2011년 임금교섭’ 제2차 본교섭을 개최하였으나 진전 없이 종료하였고 이후 결렬선언. 노<사>의 주요 쟁점은 임금총액 7.2%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임금 5.5%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임금 단계적 보전 3%(타정부투자기관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보전) <수용불가>, 초임자 연봉제 및 임금삭감 철회<연봉제는 유지, 임금삭감은 정부정책 방향 제시되면 논의>, 특정직 직무급 인상<수용불가> 등임.⁶⁾
- 노조는 10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2일 임투승리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됨. 투표결과 재적 21,300명 중 19,715명이 투표하여 14,614명(68.6% 찬성)이 찬성하여 가결, 반대는 4,798명임. 10월 2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2011년 임투승리·철도 안전 쟁취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투쟁명령을 선포함.

■ 케이티씨에스

- 케이티씨에스는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수는 9,300여 명임. 노조는 2개의 복수노조가 병존. 1노조는 ‘케이티씨에스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806명, 상급단체는 미가입. 2노조는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케이티씨에스 지부’로 민주노총이 상급단체임. 현재 조합원은 10명임.
- 지난 7월 1일,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케이티씨에스 지부’는 2008년 말~2009년 KT에서 명예퇴직 후 KTCS에 입사하여 고객불만민원(VOC) 업무를

6) 현안협의 안건(총 24개항)으로 노조요구안: 노조활동 관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철회, 정원감축 철회, 신규사업 인력충원 등 22개항임. 사측요구안: 근무제도 개선, 3급 스텝직원 연봉제 도입 등 2개항임.

담당한 284명의 인원 중 일부 인원임.

- 1노조는 2011년 5월 최초 임단협 체결, 2노조는 사측에 7월 4차례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거부함. 2노조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기각 결정(기체결 단협 존재)
- 지난 7월, 2노조는 1노조 현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케이티씨에스 노조의 설립 현황, 조합원수 현황, 임단협 체결 여부(공개), 단체협약(공개) 등에 대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받음.
- 9월, 2노조 조합원 3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8월, VOC업무(100번 콜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중 100번 콜센터로 전보된 사항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임.
- 10월 3일, 케이티씨에스지부 지부장(전해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소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공주경찰서에서 조사중임.

■ MBC

- 9월 30일, 노사는 사옥 소회의실에서 실무교섭을 개최함. 실무교섭사항 대부분 의견 접근. 10월 17일,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서명날인함.

【단협 주요내용】 ① 공통협상: ▲공정방송 관련: 프로그램 개편(공정방송협의회 개최대상 → 공정방송협의회에서 사후 설명), 정책발표회 대상자(모든 보직국장 → 편성·보도·제작 관련 국장) ▲조합 전임자 축소(상급단체 전임자 포함 31명 이내 → 5명 이내) ▲단협 유효기간 변경(2년 → 1년), 자동연장규정 폐지 → 자동갱신조항으로 개정

② 보충협상: ▲공정방송 관련: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의지에 대한 조합원 의견조사 실시(조합원 2/3 이상 문제 있다고 의견 표시 → 사장에게 결과 전달), 공방협 보직변경 요구기간 및 대상자 변경(보직국장 발령 3개월 이후 → 보임 6개월 후 문책대상자) ▲근로조건 관련: 정년(매분기 말일 → 12.31 통합<13년부터 적용>)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정비(법외 협의사항<3개항> 삭제: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확보, 단체협약, 노동쟁의 예방)

■ 금융노조

- 10월 4일, 노사는 8차 노사대표간 교섭을 실시함. 신입직원 초임삭감에 대한 정부 방침 미확정에 따라 진전 없이 종료함.7) 그러나 9월 28일 대표간 교섭시 신입직

7) 노조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사측 입장>: 총액임금 8.0% + @ 인상 <미제시>,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논의불가→2009년 각 지부별 노사합의로 시행한 사항이므로 산별중앙교섭 안건으로 부적절>, 근무시간 정상화 <논의불가>, 성과연봉제(개인별 성과차등제) 도입 금지 <논의불가>, 전임자처우 등 노사자율 결정 <논의불가>, 성과향상추진본부 등 구조조정수단 부서 운영금지 <논의불가>

원 초임삭감에 대한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2011년도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10월 초) 하지는데 노사 의견일치. 한편 이날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가 개최됨. 노사합의로 10월 20일까지 조정기간 연장

- 10월 중 노사는 9차(10일), 10차(17일) 노사대표간 교섭을 실시,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회복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 없이 종료. 양측 모두 초임삭감 관련 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음. 노조는 초임삭감 원상회복을 산별협약에 명시하자고 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부(각 기관)에 위임하는 입장을 고수⁸⁾
- 10월 19일, 노사는 임금협약 등 잠정합의에 이룸(11차 대표간 교섭). 잠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임금협약에서 2011년도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기준 몇 %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 별도합의서에는 2009년 2월 이후 채용된 대졸 신입직원의 초임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각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
- 10월 20일, 노사는 은행연합회관에서 조인식을 가짐. 한편 노조는 조인식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취하서 제출

◆ 노동계 동향

○ 양대노총, 감시단속근로자 관련 공동성명 발표 등

- 10월 5일, 양대 노총은 “고용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유예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 발표. 이 성명서에는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적용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 경비업협회 등 이익단체의 의견만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의견은 무시한 채 소위 ‘공익위원’의 의견만 반영하여 감시단속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데 문제를 제기. 이에 양대 노총은 즉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10월 13일, 양대 노총 등은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를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비노동자는

8) 개정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주요 내용: 2009년 2월 이후 채용된 신규직원의 임금을 총인건비 내에서 기존직원보다 높게 인상하여 임금격차를 조정할 수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2년 이상)으로 추진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음.

50%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노동자로 근로기준법(제63조 적용의 제외)과 최저임금법(제5조 최저임금액)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으나 여기에는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불법적 휴게시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순찰업무 등 기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실태라고 주장

- 특히 “2006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2012년에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했으나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80% 적용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한국노총,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사측 개입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 10월 5일, 한국노총은 “사측 지배개입에 의한 복수노조 설립 사례 증언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한국노총은 5개사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발장을 제출함.
- 한국노총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를 해태하면서 기존 노조원에 대한 회유·협박을 통해 신규노조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여 신규노조가 과반수노조가 되자마자 신규노조에게 교섭대표 지위를 부여하여 신규노조와 교섭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함.
- 또한 “사용자의 지원으로 상조회가 노동조합으로 바뀌어 사용자측과 상여금 삭감에 합의한 사례도 있는데, 이와 같은 사용자의 개입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임.
- 더구나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통해 노린 것이 어용노조를 양산해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등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 있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설립되는 사용자 노조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주간 선포

- 10월 17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주간 선포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및 사회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함께 비정규 노동체제의 폐기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정규 노동자 주간’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선포함. 주요 계획으로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

부가 전국순회투쟁을 10월 18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시작해 울산, 충남, 경기, 서울 검찰청·한나라당사로, 10월 17일에는 삼성 등 무노조 대기업 순회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 10월 12일, 금속노조는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71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이 조사는 9월 말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 해고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총 104명 중 71명 설문지 회수).
- 조사결과는 응답자의 92.7%가 해고 이후 정신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답하였고, 주관식 문항에 “하루에도 수십번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답변도 있는 등 정신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또한 ‘가정파탄’, ‘이혼직전’, ‘별거중’, ‘아내의 우울증’ 등 심각한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계의 어려움’을 해고생활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일로 꼽고 있음.
- 또한 전주공장의 경우 비고해자들이 해고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정규직과의 연대가 튼튼하지만 울산과 아산의 경우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금속노조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조합원 및 가족에 대해 긴급한 심리치료, 1차 설문을 중심으로 한 상세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면접조사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함. 나아가 해고자들과의 간담회, 조합원 교육, 정규직 노동자 모금운동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 기타 동향

- 발전노조 남동발전본부는 조직형태 전환을 시도함.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소속된 남동발전본부는 지난 10월 10일, 조직형태 변경(기업별노조로 전환)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됨(56.7% 찬성).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10월 4일과 10월 10일,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4일에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근로자 고 아무개 씨가 공장후문 근처 공원주차장에서 차량 내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중에 있음(자살 추정). 고 아무개 씨는 지난 2009년 5월 옥쇄파업 초기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업무복귀한 바 있음. 이어서 지난 10일에는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 김 아무개 씨가 자신의 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임. 김 아무개 씨는 희망퇴직 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음.
- 지난 10월 20일, 한나라당 사무처 소속 근로자 16명은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함. 노조명은 ‘한나라당 사무처 노동조합’이며, 조직대상은 전국 한나라당 사무처에 근무하는 자로 조직형태는 단위노조임.

◆ **경영계 동향**

- 한진중공업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 제시에 대한 경영계 의견
 -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문제와 관련해 권고안을 제시함. 8일, 경총은 “노사문제를 정치논리에 의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노사자율의 원칙과 이에 근거한 노사갈등 해결능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를 표명함.
 - 경총은 “노동계의 한진중공업 문제 이슈화에 편승해 한진중공업 사측에 정리해고를 철회하도록 압박해 왔다”고 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주를 피의자 취급하고, 노동위원회와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한 ‘긴박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부당한 해고로 취급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은 부득이하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성명을 통해 경총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노사문제 개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함.

◆ **정부, 국회 등 동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에 권고안 제시
 -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공동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함. 여야가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94명의 해고노동자 전원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고, “고용 전까지 2천만 원 한도의 생계비 지원”을 제시하였음. 또한 85호 크레인 농성의 중단도 권고안에 포함됨.
 -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씨가 일단 내려오는 조건으로 일단 권고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고 발언하여 사실상 권고안을 수용함. 크레인 농성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권고안에 따라 교섭이 이뤄질테니 교섭내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고용노동부,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률은 90% 넘어 안착 단계라고 밝혀
 - 지난 10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률이 90%가 넘어 안착 단계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시행 100일을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순조롭

게 정착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노동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노조 설립 추세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음.⁹⁾ 또한 “당초 우려했던 노조 난립이나 노조 설립 관련 분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함.

- 상급단체 가입 없이 독립노조를 설립하는 양상이 시행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¹⁰⁾ 이를 “현장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률도 90%를 넘어 대부분의 교섭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민주노총 사업장도 대부분 창구 단일화를 이행하는 등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설명함(민주노총 사업장은 86.2%, 한국노총 사업장은 89.8% 창구단일화 절차이행).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9월 30일, 여수고용지청은 여수시 수정동 소재 해운업체 전 대표 김 아무개 씨(76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 구속된 김 아무개 씨는 1997년 5월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9천 6백만 원을 체불하고, 기계매각 대금 2천 4백만 원을 체불임금 충당에 사용치 않고 도피자금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처와 함께 미국으로 도피해 14년 5개월 동안 도피생활 후 지난 9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긴급체포됨.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한 점,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도주우려가 있는 점 등에 따라 구속됨. [11]

(김기람,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

9) 1일 평균 노조 설립 : 7월(10.4개) → 8월(3.5개) → 9월(2.3개)
 10) 시행 초기부터 신규노조 대부분이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72.7%)하며 상급단체 선택 없이 설립 신고(85.5%)하는 양상이 지속됨.